

전문가의 법정 증언에 대한 인식 및 증언의 허용성 평가

김민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판사 또는 배심원에게 증거를 이해시키거나 사실을 판단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전문가의 법정 증언에 대한 판단은 판사가 한다. 미국의 경우 전문가의 법정 증언 허용에 대한 기준들이 마련되어 있지만 한국에서는 과학적 증거나 과학적 증거에 바탕을 둔 전문가 증언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며 관련 증거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 연구는 한국의 판사와 일반인들이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 전문가 증언에 대한 허용 경험, 전문가 증언의 허용 여부를 고려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준들은 무엇인지 알아보았다. 그 결과 한국 판사와 일반인들은 일반적으로 법과학 증거나 의학 증거 관련 전문가들의 법정 증언이 유무죄 판단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다른 분야의 전문가 보다 더 정직하고 유능하며 신뢰롭다고 인식하였다. 하지만 경찰, 회계/부동산 감정가, 거짓말 탐지 검사관에 대한 중요성, 정직성, 유능성, 신뢰성에 대한 인식은 가장 낮았다. 또한 판사들은 전문가 증언에 대한 허용 여부를 고려할 때 전문가가 받은 훈련의 내용, 증언에서 사용된 이론이나 증거 분석 및 연구 방법이 학계에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지, 이전에 전문가로 증언했는지 여부를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어: 전문가 증언, 과학적 증거, 증언 허용 기준, 전문가 증언에 대한 인식

전문가의 법정 증언은 사실 판단자인 판사 또는 배심원에게 증거를 이해시키거나 사실을 판단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을 목표로 한다(Vidmar, 2005). 미국의 연방증거규칙(Federal Rules of Evidence) 제 702조는 전문가의 증언(testimony by expert)을 “과학적(scientific), 기술적(technical), 혹은 기타 특수한 지식(specialized knowledge)이 사실 판단자가 증거를 이해하거나 쟁점에 대하여 무엇이 사실인가를 판단하는데 도움이 되는

대하여 무엇이 사실인가를 판단하는데 도움이 되는 경우 지식, 기술, 경험, 훈련 또는 교육에 의해 전문가의 자격이 인정되고(qualified), 의견이나 기타 형태로 해당 사안에 대해 증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문가의 법정 증언에 대한 허용 여부는 판사가 판단하는데 그 기준은 과학적, 기술적, 또는 기타 특수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의 증언이 해당 사건과 관련되어 있는지와 신뢰로운 원칙과 방법에 의해 쟁점이 되는 사실에

† 교신저자: 김민지. 137-715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한국형사정책연구원 7층 705호. mkim@kic.re.kr

적용되었는가이다(Faigman & Monahan, 2005). 즉, 전문가 증인의 법정 증언의 허용 여부를 결정하는 판사는 전문가의 증언과 현재 재판과의 관련성(relevant)과 증거의 신뢰성(reliable)을 판단해야 한다.

미국연방대법원은 *Daubert v. Merrell Dow Pharmaceuticals, Inc.*(1993) 재판의 판결문을 통해 과학적 증거의 관련성은 사실 판단자가 증거를 이해하거나 쟁점이 되는 사실을 판단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assist the trier of fact to understand the evidence or determine a fact in issue)이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판사는 과학적 증거의 신뢰성을 다음 네 가지 기준을 통해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하였는데 1)이론이나 기술이 검증되었는지 또는 검증할 수 있는지(falsifiability), 2)이론이나 기술이 학계의 동료 학자들에 의해 심사되고 출판 되었는지(peer review), 3)기술에 대해 알려져 있는 또는 잠재적인 오차율은 얼마나 되는지(error rate), 그리고 4)이론이나 기술이 해당 학계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지(general acceptance) 여부이다. 신뢰성을 판단하는 네 가지의 기준들은 이론, 기술, 기법 및 연구 방법들이 과학적으로 타당해야 한다는 뜻이며 판사는 문지기(gatekeeper)처럼 과학적 지식에 바탕을 둔 전문가의 증언에 대한 관련성과 신뢰성을 판단하여 증거가 법정에서 들어올 수 있는지 판단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이런 내용은 연방 증거규칙에서도 잘 나타나 있는데 전문가의 증언은 1)충분한 사실(sufficient facts) 또는 데이터에 바탕을 두어야 하고, 2)신뢰로운 원칙(principle)과 방법(methods)에 의한 것이며, 3)원칙과 방법이 쟁점이 되는 사실에 신뢰롭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실제로 미국 연방 민사 재판에서의 판사들은 전문가 증언에 대해 Daubert 기준이 적용되기 이전인 1991년과 Daubert 기준이 적용된 후인 1998년에 실시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Daubert 기준이 적용되기 전 보다 적용된 후에 재판 전부터 전문가 증언에 대해 좀 더 자세히 검토하고 전문가 증언을 제한하거나 배제시키는 비율이 25%에서 41%로 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Krafka, Dunn, Johnson, Cecil & Miletich, 2002). 전문가 증언 배제의 이유는 1991년과 1998년이 비슷하였는데 1998년 설문에서는 재판과의 관련성 없음(47%), 전문가의 자격 미달(42%), 전문가의 증언이 사실 판단자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40%), 전문가의 증언이 신뢰롭지 못했기 때문(22%), 사실판단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확률이 더 높았기 때문(21%), 전문가 증언이 기초한 원리와 방법이 신뢰롭지 못했기 때문(18%), 전문가 증언이 반복되고 재판 시간 낭비(10%), 전문가 증언이 사건의 사실에 신뢰롭지 못하게 적용되지 못했기 때문(10%)이라고 답하였다. 이로서 Daubert 기준 적용 이후에 미국의 판사들은 실제로 전문가의 증언이 기초한 원리와 방법이 신뢰로운지 여부를 판단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Daubert 기준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법정에서 과학적 증거에 대해 설명을 해줄 수 있는 전문가의 증언에 대한 허용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판사들은 실제로 Daubert 판결에서 제시한 신뢰성을 가늠할 수 있는 네 가지 기준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실제로 적용하지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Gotowski, Dobbin, Richardson, Ginsburg, Merlino, & Dahir (2001)의 연구에서 설문에 참여한 400명의 판사들 중 이론이나 기술이 학계의 동료 학자들에 의해 심사되고 출판 되었는지의 여부와 이론이나 기술이 해당 학계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지의 여부는 증언 허용 여부 판단에 유용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각각 71%와 82%). 하지만 88%의 판사가 이론이나 기술이 검증되었는지 또는 검증할 수 있는지 여부가 증언 허용 판단에 유용한 지침이라고 믿고 있지만 실제로 6%의 판사들만이 이 기준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다. 또한 91%의 판사가 기술에 대해 알려져 있는 또는 잠재적인 오차율이 높은지 여부가 허용 판단에 유용한 지침이라고 믿고 있지만 오직 4%의 판사들만이 오차율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1%의 판사들은 판사의 문지기 역할을 지지하였다. 또한 판사들은 전문가의 증언이 결함이 있는 연구에 바탕을 두고 있는지 타당한 연구에 바탕을 두고 있는지에 대해 구분하지 못하였다(Kovera, McAuliff, & Herbert, 1999; Kovera & McAuliff, 2000). 결과적으로 Daubert 판결은 판사들에게 어느 정도의 과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비과학적인 증거나 전문가의 증언이 법정에서 증거로 제시될 수 없도록 증거를 감시하는 문지기 역할을 맡겼으나 실제로는 Daubert 판결에서 요구하는 감시자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런 능력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불합리하다는 비판들이 제기되었다(Faigman & Monahan, 2005). 미국에서건 한국에서건 판사들이 전문가의 법정 증언을 허용하는 비율이 낮은 것을 감안하면 미국의 판사들은 과학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전문가 증언을 배척하기 보다는 과학적으로 타당한 전문가 증언을 배척하는 비율이 더 높다고 생각되는데 이는 전문가 증언을 통해 배심원들이 올바른 법적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된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McAulif & Grouscup, 2009).

미국에서는 재판의 당사자가 각각의 전문가를 내세울 수 있는 반면에 한국의 경우에는 법원의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듣고 각 사건마다 1인 이상의 전문심리위원을 법원이 지정하도록 되어 있다. 한국의 형사소송법 제 279조 2항에 의하면 전문심리위원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거나 소송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공판준비 및 공판 기일등 소송절차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문적인 지식에 의한 설명이나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법정에서 전문적인 지식에 의하여 설명이나 의견을 진술 할 수 있다”. 하지만 전문심리위원은 형법 제 169조의 감정인과는 구분되는 개념이다. 법원이 학식경험이 있는 자에게 감정을 명할 수 있는 점, 감정을 명할 때는 감정사항을 명확하게 해야 하는 점, 감정인은 감정 전에 선서의 의무가 부여되는 점, 그리고 감정은 증거자료가 될 수 있다는 점이 전문심리위원과 구분되는 개념이다(법원행정처, 2007). 한국 법정에서의 감정인 또는 전문심리위원의 역할은 미국에서의 전문가 증인(expert witness)의 개념이나 역할이 같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법과학 증거를 분석하는 분석관들이나 전문가들은 대부분 경찰이나 검찰 산하 연구소에서 일을 하고 실정이기 때문에 변호인 측을 위해 전문가 증언을 해줄 법과학자를 찾는 일은 거의 불가능 한 실정이다. 미국의 경우도 형사 재판에서는 정신과 전문의를 제외하고는 병리학자, 화학자, 탄도학자들의 경우 대부분 검찰 측 증인으로 제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Saks & Wissler, 1984). 또한 배심원들이 얼마나 전문적인 증거를 이해하고 사실판단에 적용하는지, 여러 전문가 증언들에 대해 어떠한 반응을 보일지는 재판 밖에서 이루어지는 개인적인 경험, 책, 텔레비전, 영화, 잡지를 통해 얻

는 정보나 지식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배심원들은 여러 범주의 증인들에 대해 여러 가지 다른 견해들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Saks & Wissler(1984)는 미국 메사추세츠주에서 배심원으로 참여가 확정된 97명을 대상으로 재판에서 증인으로 볼 수 있을만한 10명의 증인들(의사, 화학자, 총기 전문가, 회계사/부동산 전문가, 필체 전문가, 정신과 의사, 심리학자, 거짓말 탐지기 전문가, 경찰관, 목격자)에 대해 한 재판의 배심원이라면, 10명의 전문가 증언에 대해 얼마나 동의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각각의 전문가는 정직함과 능숙함의 비율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1(아주 낮다)에서 10(아주 높다)의 척도로 답하게 하였다. 또한 각각의 전문가에 대해 일반적으로 긍정적, 부정적 경험(또는 무경험)이 있었는지에 대해 질문하였다. 설문 결과에 의하면 배심원들은 의사, 화학자, 총기 전문가의 증언에 가장 높은 비율로 동의할 것이라고 답하였고 회계사/부동산 전문가, 정신과 의사, 목격자, 심리학자는 그 다음, 그리고 필체 전문가와 거짓말 탐지기 전문가가 가장 낮은 비율로 그들의 증언에 동의할 것이라고 답하였다. 또한 전문가 증언에 동의한다는 비율이 높을수록 전문가들이 더 정직하고 능숙하다고 인식하였다. 또한 법원 외부, 즉 일상생활에서 전문가들과의 접촉 경험이 긍정적 이었는지 부정적 이었는지에 따라 법정에서 전문가의 의견에 얼마나 동의 할 것인지에 대해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심원들은 일반적으로 특정 분야의 전문가에 대해서는 다른 분야의 전문가들에 비해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으므로 이러한 편견으로 인해 재판에서 특정 전문가의 증언에 대한 증거능력 및 중요성을 실제보다 매우 높게 평가할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면, 미국에서는 CSI나 Law & Order와 같은 드라마가 인기를 끌면서 드라마에서 다루어지는 법과학 증거들이 실제 법정에서도 증거로 제시되기를 기대하고 형사사건에서는 무조건 법과학 증거를 요구하는 배심원들이 많다는 검사들의 경험들이 알려지면서 “CSI 영향(CSI effect)”이라는 신조어가 생기게 되었다(Stevens, 2008). 실제 CSI와 같은 드라마를 많이 보는 배심원일수록 실제 법정에서 유무죄 판단에 영향을 줄 것인지에 대한 실증적 연구들이 진행되었는데 초기 연구들에서는 직간접적으로 배심원의 유무죄 판단에 영향이 있다는 견해들이 많았으나 최근 연구 결과들에 의

하면 CSI나 법정관련 드라마의 시청은 배심원의 유무죄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Kim, Barak, & Shelton, 2009; Robbers, 2008; Stevens, 2008; Tyler, 2007). 또한 미국에서는 1980년대 후반부터 법과학 증거 분석의 오류 및 분석관의 실수, 또는 전문가의 부적절한 법정 증언으로 인해 오판이 확인된 사례들을 점차 증가하면서 법정에서도 법과학 증거의 분석기법이나 분석 방법의 타당성 여부에 대한 집중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다(Garrett & Neufeld, 2009).

박광배(1997)에 의하면 미국에서는 증거의 법정 유입 여부에 따라 과학적 증거의 타당성을 판단하고 배심원들이 유입된 증거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고려하는지에 대해서는 판사는 관여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는 과학적 증거의 법정유입여부를 따로 판단하지 않고 가능한 모든 증거들이 일단 범정에 유입되지만 각 증거들에 대한 중요도와 비중은 각 증거들의 확실성 여부에 따라 판단된다고 한다. 물론 한국과 미국이 과학적 증거나 전문가 증언의 법정 허용 여부에 대한 판단 방식은 다르지만 증거에 대한 타당성 판단은 판사에게 맡겨지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과거 몇몇의 판례들에 의해 증거의 허용성과 신빙성에 대한 판단 규정이 설명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과학적 증거에 대한 증거능력(허용성) 및 증명력(신빙성)을 판단할 수 있는 명시적 규정이 없고 상세한 증거법이 존재하지 않는다(심회기, 1999). 부검, 지문 감식, 유전자 감식이 실무상 그리고 판례상 자주 언급되는 과학적 증거이며 거짓말 탐지검사 결과에 대해 증거로서의 허용성과 신빙성이 가장 많이 검토되었고 피고인의 정신 상태에 대한 감정, 필적 감정에 대한 증거능력과 증명력에 대한 몇 개의 판결이 있을 뿐이다(심회기, 1999).

빠른 속도로 과학이 발전하고 있고 한국에서의 국민 참여재판의 도입으로 인해 판사나 배심원들과 같은 사실 판단자가 과학적, 기술적, 특수한 지식들을 바탕으로 증거를 이해하거나 재판 쟁점에 대해 사실 판단을 해야 하는 경우가 늘어날 것이다. 전문가의 법정 증언은 사실 판단자의 법적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지만 한국에서는 전문가의 법정 증언에 대한 인식이 어떠한지, 전문가 증언의 허용 여부를 결정할 때 어떤 요인들이 중요하게 고려되는지에 대한 연구가 없는 실정이다. 한국

에서도 특정 분야의 증거나 전문가 증언에 대해 맹목적으로 신뢰하는지 특정 분야 전문가의 증언이기 때문에 실제보다 더 높은 증명력을 가지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전문가의 법정 증언이 판사와 배심원들의 법적 판단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실증적 연구를 진행하기 앞서 판사와 일반인들이 여러 분야의 과학적 증거나 전문가 증언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이 어떠한지 알아보고 판사들의 전문가 증언에 대한 허용 경험과 전문가 증언의 법정 허용을 고려할 때 어떤 기준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 방법

연구대상

서울, 대전, 수원에서 판사 업무를 보고 있는 총 58명의 판사가 설문에 참여하였다. 나이는 28세에서 51세 사이였다($M = 38.47$, $SD = 5.70$). 참가자는 2008년 사법연수원에서 법관 연수를 받고 있는 판사들이었고 나머지는 스노우볼링 표집(snow bowling sampling)을 통해 설문에 참여하였다. 판사의 80.8%($N = 42$)는 남성이었고 재판 경력은 2년에서 22년 사이였으며 평균 9.01년($SD = 5.90$)이었으며 형사 재판 경험은 7개월에서 10년 사이였으며 평균 3.47년($SD = 2.20$)이었다. 일반인은 서울 두 곳과 수원 한 곳에 소재해 있는 대학에서 수업을 듣고 있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총 참여 학생은 583명이었으며 학생들의 나이는 18세에서 42세였고($M = 21.35$, $SD = 2.91$) 44.1%($N = 237$)은 남성이었다.

설문내용

여러 영역의 전문가의 법정 증언에 대한 판사 및 일반인의 전반적인 인식에 대해 알아보고자 다음 14개 분야의 전문가에 대한 질문을 하였는데 그 분야는 의사, 심리학자, 약물/화학 전문가, 총기 전문가, 회계사/부동산 전문가, 거짓말 탐지 전문가, 필적 전문가, 경찰관, 정신과 의사, 목격자에 대해 연구한 전문가, 허위자백 전문가, DNA 전문가, 법의학자, 지문 전문가였다. 처음

의 네 문항은 “만약 어느 재판의 배심원이라면(또는 판사라면), 일반적으로 재판에서 다음 전문가들의 증언은 피고인에 대한 유무죄 판단을 내리는데 얼마나 중요합니까?(중요성)와 함께 “다음 분야의 전문가들에 대한 전반적인 정직성, 유능성, 신뢰성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였다. 모든 질문은 7점 리커트 척도(예: 1: 전혀 중요하지 않다, 7: 매우 중요하다)로 측정하였다.

판사에게는 다음의 문항들이 추가되었다. 위에서 언급된 14개 분야의 전문가에 대해 담당 재판에서 증언 허용 여부를 심사한 경험이 있는지, 전문가 증언을 허용한 경험은 있는지, 거부한 경험이 있는지 물었고 각 문항에 대한 복수응답이 가능하였다. 또한 전문가 증언에 대한 허용을 고려할 때 사용될 수 있는 기준들(전문가의 교육수준, 학력, 관련 분야에 대해 받은 훈련, 출판물의 수, 전문가적인 경험, 현재의 위치/직함, 전문가 증언 경험 여부, 전문가 증언 내용에 바탕을 둔 이론이나 기술이 학계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지 여부)에 대해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되는지 7점 리커트 척도(1: 전혀 중요하지 않다, 7: 매우 중요하다)로 측정하였다. 설문에서 부가적으로 허용이란 현재의 증거법이나 그밖에 법률을 토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증언을 통해 배심원들이 공평하고 정확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을지에 대한 법 전문가로서의 개인적인 의견을 말한다고 설명하였다.

연구가설

Saks & Wissler(1984)의 연구 결과와 비슷하게 한국의 판사와 일반인들은 특정 영역의 전문가들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이 다른 영역의 전문가들 보다 유무죄 판단에 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인식할 것이다. 즉, DNA 전문가, 화학/마약 전문가, 법의학자, 지문 감식관과 같이 법과학 관련 전문가들의 경우 다른 분야의 전문가들보다 유무죄 판단에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인식할 것이며 또한 더 정직하고, 유능하며, 신뢰롭다고 인식할 것이다.

결 과

분석에 앞서 일반인과 판사들이 전문가들에 대한 반

응 편향성이 보였는지 검증해 보았다. 즉, 특정 전문가에 대해 일반인, 판사, 또는 두 집단 모두 일관적으로 높은 점수를 주거나 낮은 점수를 주는지 여부를 판단하였다. 총 14가지의 전문 분야 중 일반인들에게 쉽게 접할 수 있는 의사와 회계사/부동산 감정가와 일반인들이 쉽게 접할 수 없는 법의학자에 대해 판사와 일반인들의 중요성, 정직성, 유능성, 신뢰성에 대한 반응편향성 여부를 측정할 결과 의사의 경우 유능성에 대해서만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판사: $M = 5.58$, $SD = .86$, 일반인: $M = 5.86$, $SD = .94$, $t(583) = -2.007$, $p = .045$). 회계사의 경우 중요성에 대해서만 두 집단 간 차이를 보였으며(판사: $M = 4.38$, $SD = 1.07$, 일반인: $M = 3.77$, $SD = 1.43$, $t(69.80)^{1)} = 5.010$, $p < .001$) 법의학자의 경우 정직성에 대해 두 집단 간 차이를 보였다(판사: $M = 6.06$, $SD = .73$, 일반인: $M = 5.76$, $SD = 1.07$, $t(72.27) = 2.623$, $p = .011$). 이 결과는 판사와 일반인들이 전문가들에 대한 네 영역에서의 평가가 일괄적으로 높거나 낮게 답을 했을 가능성이 적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로서 각각의 전문가에 대한 중요성, 정직성, 유능성, 신뢰성에 대한 판사 및 일반인의 인식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졌으며 그 결과는 표 1 제시하였다.

중요성

판사들과 일반인들이 일반적으로 각 분야의 전문가 증언이 유무죄 판단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알아보았다. 일반인들은 DNA 전문가, 지문 전문가, 법의학자, 의사의 순서로 법과학 또는 의학 관련 전문가들의 순서로 유무죄 판단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인식하였다. 하지만 경찰, 회계사/부동산 감정가, 필적 전문가, 거짓말 탐지 검사관의 증언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가장 낮았다. 판사들 또한 DNA 전문가, 지문 전문가, 법의학자, 의사의 순서로 법적 판단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였다. 하지만 거짓말 탐지 검사관, 회계사/부동산 감정가, 허위자백 전문가, 경찰의 순서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인식하

¹⁾ SPSS에서 Levene's Test 결과에 의하면 집단간 분산이 다르기 때문에 등분산이 가정되지 않은 아래 부분의 결과를 사용해야 하고 따라서 자유도가 정상과 달리 소수점으로 나온다.

는 비율이 가장 낮았다. 판사들과 일반인들 모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전문가에 대한 인식은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판사와 일반인이 인식하는 전문가 증언의 중요성에 대한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 검증을 실시하였다. 각 분야 별 전문가 증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판사나 일반인에 관계없이 대부분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판사들은 일반인들에 비해 약물/화학 전문가($t(98.80) = -5.012, p < .001$), 총기 전문가($t(72.66) = -3.294, p = .002$), 회계사/부동산 전문가($t(69.80) = 6.339, p < .001$)를 더 중요하다고 인식하였다. 하지만 일반인들은 판사들 보다 경찰관($t(66.85) = 5.237, p < .001$), 목격자에 대해 연구한 전문가($t(73.96) = 4.938, p < .001$), 허위자백 전문가($t(73.29) = 3.824, p < .001$)를 더 중요하다고 인식하였다.

정직성

판사들과 일반인들이 각 분야의 전문가가 얼마나 정직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알아보았다. 일반인들은 DNA 전문가, 지문 전문가, 법의학자, 의사의 순으로 가장 정직하다고 인식하였다. 하지만 회계사/부동산 감정가, 경찰, 거짓말 탐지 검사관, 허위자백 전문가의 순서로 정직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가장 낮았다. 판사는 법의학자, DNA 전문가, 지문 전문가, 의사 순으로 가장 정직하다고 인식하였다. 하지만 경찰, 회계사/부동산 감정가, 거짓말 탐지 검사관, 필적 전문가의 순서로 정직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가장 낮았다. 판사와 일반인 모두 다른 분야의 전문가들 보다 법과학 또는 의학 관련 전문가들이 가장 정직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판사와 일반인이 인식하는 전문가의 정직성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 검증을 실시하였다. 각 분야 별 전문가에 대한 정직성 인식은 판사나 일반인에 관계없이 대부분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판사들은 일반인들에 비해 심리학자($t(71.11) = -3.283, p = .002$), 정신과 의사($t(582) = -2.925, p = .004$), 허위자백 전문가($t(65.83) = -2.679, p = .009$), 법의학자($t(72.27) = -2.623, p = .011$)들을 더 정직하다고 생각하였다.

유능성

판사들과 일반인들이 각 분야의 전문가가 얼마나 유

능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알아보았다. 일반인들은 DNA 전문가, 법의학자, 의사, 지문 전문가의 순으로 가장 유능하다고 인식하였다. 하지만 경찰, 거짓말 탐지 검사관, 회계사/부동산 감정가의 순서로 유능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가장 낮았다. 판사는 DNA 전문가, 법의학자, 지문 전문가, 의사의 순으로 유능하다고 인식하였다. 하지만 경찰, 거짓말 탐지 검사관, 회계사/부동산 감정가의 순서로 유능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가장 낮아 일반인들과 비슷하였다. 판사와 일반인 모두 다른 분야의 전문가들 보다 법과학 또는 의학 관련 전문가들이 가장 유능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판사와 일반인이 인식하는 전문가의 유능성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 검증을 실시하였다. 각 분야 별 전문가에 대한 유능성 인식은 판사나 일반인에 관계없이 대부분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판사들은 일반인들 보다 약물/화학전문가($t(70.94) = -2.882, p = .005$)와 총기 전문가($t(69.50) = -2.936, p = .005$)를 더 유능하다고 생각하였다. 하지만 일반인들은 판사들보다 의사($t(583) = 2.007, p = .045$)와 경찰관($t(580) = 2.824, p = .005$)을 더 유능하다고 인식하였다.

신뢰성

판사들과 일반인들이 각 분야의 전문가가 얼마나 신뢰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알아보았다. 일반인들은 DNA 전문가, 법의학자, 지문 전문가, 의사의 순으로 신뢰롭다고 생각하였다. 하지만 회계사/부동산 감정가, 경찰, 거짓말 탐지 검사관, 필적 전문가의 순서로 신뢰롭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가장 낮았다. 판사의 경우에는 DNA 전문가, 법의학자, 지문 전문가, 의사의 순서로 신뢰롭다고 생각하였지만 경찰, 회계사/부동산 감정가, 거짓말 탐지 검사관의 순서로 신뢰롭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가장 낮았다. 전문가의 중요성, 정직성, 유능성과 마찬가지로 판사와 일반인들은 법과학 또는 의학 분야의 전문가가 가장 신뢰롭다고 생각하였다. 판사와 일반인이 인식하는 전문가의 신뢰성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 검증을 실시하였다. 각 분야 별 전문가에 대한 신뢰성 인식은 판사나 일반인에 관계없이 대부분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일반인들 보다 판사들이 심리학자($t(583) = -2.160, p = .031$), 약물/화

표 1. 전문가에 대한 판사와 일반인의 중요성, 정직성, 유능성, 신뢰성에 대한 인식의 차이

	평균 (표준편차)							
	중요성		정직성		유능성		신뢰성	
	판사	일반인	판사	일반인	판사	일반인	판사	일반인
의사	5.91 (.76)	6.05 (1.00)	5.45 (.99)	5.57 (1.17)	5.58 (.86)	5.86 (.94)	5.60 (.88)	5.52 (1.14)
심리학자	4.89 (.98)	5.18 (1.21)	5.43 (.81)	5.03 (1.15)	5.18 (.92)	5.39 (1.08)	5.26 (.99)	4.90 (1.14)
화학/마약 전문가	5.69 (.72)	5.11 (1.40)	5.43 (.83)	5.16 (1.29)	5.51 (.79)	5.15 (1.23)	5.50 (.76)	4.99 (1.20)
총기류 전문가	5.29 (1.08)	4.75 (1.60)	5.22 (.95)	5.04 (1.34)	5.35 (.86)	4.95 (1.28)	5.29 (.84)	4.89 (1.23)
회계사/부동산	4.38 (1.07)	3.37 (1.43)	4.41 (.78)	4.14 (1.34)	4.56 (.91)	4.45 (1.28)	4.40 (.81)	4.10 (1.25)
거짓말 탐지 검사관	4.10 (1.18)	4.21 (1.49)	4.84 (1.12)	4.61 (1.28)	4.44 (1.11)	4.44 (1.31)	4.48 (1.05)	4.28 (1.31)
필적 전문가	4.70 (1.27)	4.72 (1.43)	4.96 (1.02)	4.86 (1.17)	5.00 (.99)	4.85 (1.26)	5.06 (.97)	4.61 (1.25)
경찰	4.64 (1.32)	3.74 (1.19)	3.88 (1.05)	4.15 (1.26)	3.92 (1.18)	4.43(1.2 3)	3.71 (1.06)	4.18 (1.24)
정신과 의사	4.78 (.97)	5.05 (1.21)	5.37 (.92)	4.91 (1.09)	5.08 (.90)	5.24 (1.08)	5.10 (.85)	4.87 (1.18)
목격자 전문가	4.74 (.91)	5.41 (1.24)	5.12 (.95)	4.83 (1.15)	4.92 (.97)	4.81 (1.13)	4.98 (.85)	4.76 (1.08)
허위 자백 전문가	4.61 (1.02)	5.19 (1.36)	5.06 (.97)	4.67 (1.21)	4.84 (1.02)	4.81 (1.13)	4.94 (.83)	4.64 (1.14)
DNA 전문가	6.30 (.66)	6.50 (.79)	6.00 (.94)	6.15 (.98)	6.00 (.73)	6.10 (.92)	5.98 (.60)	6.09 (.97)
법의학자	6.11 (.73)	6.05 (1.03)	6.06 (.73)	5.76 (1.07)	5.92 (.80)	5.87 (.98)	5.92 (.64)	5.76 (1.12)
지문 감식관	6.11 (.74)	6.10 (1.11)	5.98 (.68)	5.86 (1.05)	5.90 (.65)	5.69 (1.1)	5.88 (.63)	5.68 (1.12)

학 전문가(t(74.11) = -4.238, p < .001), 총기 전문가(t(68.58) = -3.043, p = .003), 필적 전문가(t(63.61) = -3.062, p = .003), 허위 자백 전문가(t(65.87) = -2.347, p = .022)가 더 신뢰롭다고 생각하였다. 하지만 일반인들은 판사들보다 경찰관(t(582) = 2.548, p = .01)이 더 신뢰롭다고 생각하였다.

전문가의 중요성, 정직성, 유능성, 신뢰성의 순위 및 순위 상한

각각 전문가에 대해 판사와 일반인이 인식하고 있는 중요성과 정직성, 유능성, 신뢰성에 대한 순위는 표 2에 제시되었다. 각 전문가에 대한 순위를 자세히 보면 판사의 경우 중요성, 정직성, 유능성, 신뢰성에 대해 의사는 모두 네 번째, 화학/마약전문가는 다섯 번째 순위였고 일반인의 경우 DNA 전문가가 모든 영역에서 첫 번째의 순위였다. 하지만 각각의 전문가에 대한 네 가지 영역의 순위는 조금씩 차이가 있었지만 그 순위들은 거의

표 2. 판사와 일반인들의 전문가의 중요성, 정직성, 유능성, 신뢰성의 순위와 순위 상관

	판사				일반인			
	중요성	정직성	유능성	신뢰성	중요성	정직성	유능성	신뢰성
의사	4	4	4	4	3	4	3	4
심리학자	7	5	6	6	7	7	5	6
화학/마약 전문가	5	5	5	5	8	5	10	9
총기류 전문가	6	8	8	8	10	6	11	10
회계사/부동산 감정가	13	13	12	11	14	14	12	14
거짓말 탐지 검사관	14	12	11	14	12	12	13	12
필적 전문가	10	11	14	12	11	9	6	8
경찰	11	14	13	13	13	13	14	13
정신과 의사	8	7	7	7	9	8	7	5
목격자 전문가	9	9	10	9	5	10	8	7
허위자백 전문가	12	10	9	10	6	11	9	11
DNA 전문가	1	2	3	2	1	1	1	1
법의학자	2	1	1	1	3	3	2	2
지문 감식관	2	3	2	3	2	2	4	3
중요성과의 스피어만 순위상관계수	---	.94	.88	.94	---	.82	.85	.87

비슷하였다. 예를들면, 법의학자의 경우 판사는 중요성이 두 번째였지만 정직성, 유능성, 신뢰성은 모두 첫 번째 순위였고 일반인의 경우 중요성과 정직성은 세 번째였고 유능성과 신뢰성은 두 번째 순위였다. 네 영역에 대한 순위는 조금씩 차이가 있었지만 판사와 일반인 모두 대체로 각각의 전문가에 대한 중요성, 정직성, 유능성, 신뢰성의 순위는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각각의 순위로부터 순위 상관을 산출하였는데 판사의 경우 중요성과 정직성($r = .94, p < .001$), 유능성($r = .88, p < .001$), 신뢰성($r = .94, p < .001$) 사이의 순위 상관은 모두 유의미했다. 일반인의 경우도 중요성과 정직성($r = .82, p < .001$), 유능성($r = .85, p < .001$), 신뢰성($r = .87, p < .001$) 사이의 순위 상관은 모두 유의미했다. 이는 일반적으로 피고의 유무죄 판단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인식하고 있는 전문가의 증언일수록 일관되게 정직하고 유능하며, 신뢰롭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전문가의 법정 증언 심사, 허용, 또는 거부 경험

총 48명의 판사가 전문가가 법정에서 증언에 대한 허용 여부를 심사했던 경험은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재판에서 의사, 경찰, 회계사/부동산 감정가, 필적 전문가, 법의학자, 정신과 의사의 순서로 법정에서의 증언에 대한 허용 여부를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심리학 관련 전문가들(심리학자, 목격자 전문가, 허위자백 전문가)에 대한 허용 심사 평가들은 그 빈도가 낮았다. 총 43명의 판사가 전문가가 법정에서 증언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경험에 대해 답변하였는데 의사, 경찰, 회계사/부동산 감정가, 필적 전문가, 법의학자의 순으로 법정 증언을 허용하였다. 판사들은 경찰관이 법정에서 증언하도록 허용도 많이 하지만 반대로 허용을 하지 않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판사들이 경찰관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즉 증언으로서의 중요성, 정직성, 유능성, 신뢰성이 낮은 점을 미루어 볼 때 경찰

표 3. 판사의 전문가의 법정 증언 허용 여부 평가 경험 빈도

전문가	증언 심사 경험 (N = 48)	증언 허용 경험 (N = 43)	증언 거부 경험 (N = 42)
의사	41	37	1
심리학자	4	4	0
화학/마약 전문가	5	3	0
총기류 전문가	1	0	0
회계사/ 부동산 감정가	28	20	3
거짓말 탐지 검사관	9	4	3
필적 전문가	25	18	2
경찰	38	33	7
정신과 의사	16	10	1
목격자 전문가	1	1	1
허위 자백 전문가	0	0	1
DNA 전문가	12	9	0
법의학자	17	16	2
지문감식관	6	4	0

판의 법정 증언을 허락하지 않는 경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 증언 허용 고려 시 사용되는 기준

판사들에게 전문가 증언에 대한 허용을 고려할 때 사용될 수 있는 여러 기준들의 중요성에 대해 질문하였다. 전문가가 관련 분야에 대해 받은 훈련, 이론이나 기술이 학계에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지의 여부, 과거 재판에서 전문가로 증언했는지의 여부, 교육 수준의 순으로 중

요하다고 생각하였다. 판사의 경력과 성별에 따라 전문가 증언 허용 고려 시 사용되는 기준들에 대한 중요성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았지만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전문가적인 경험에 대해 10년 미만의 경력을 가진 판사들(N = 32, M = 1.00, SD = .001)보다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판사들(N = 20, M = 2.25, SD = .44)이 전문가적인 경험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였다(t(19) = -12.283, p < .001). 하지만 판사나 일반인 모두 다른 기준들에 비해 전문가적인 경험은 그렇게 중요한 기준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M = 1.63, SD = 1.02).

표 4. 전문가 증언 허용 고려 시 사용하는 기준들의 중요성

전문가의 법정 증언 허용 고려 기준	평균 (표준 편차)
교육 수준	5.07 (1.16)
학력	3.44 (1.39)
관련 분야에 대해 받은 훈련	6.14 (.73)
출판물 (전문 서적, 연구 논문)의 수	4.26 (.95)
전문가적인 경험 (전문 저널의 편집자, 전문가 단체의 직분)	1.63 (1.02)
현재의 위치/직함	4.37 (1.25)
과거 재판에서 전문가로 증언했는지의 여부	5.28 (1.14)
이론이나 기술이 학계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지 여부	5.88 (.66)

논 의

특정 전문가들의 증언이 유무죄 판단을 하는데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과 실제 재판 상황에서 특정 전문가의 증언이 유무죄 판단에 얼마나 영향을 주었는지를 평가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또한 판사나 일반인들이 특정 전문가들에 대해 얼마나 정직하고 유능하며 신뢰롭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과 실제 특정 전문가들이 얼마나 정직하고 유능하며 신뢰로운가에 대한 평가와는 차이가 있다. 일반인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법과학자들의 능력은 분야에 따라 각각 다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한 연구에 의하면 특정 혈액검사의 경우 판단 오류율은 71.2%, 특정 약물 검사는 18.2%, 총기관련 검사는 28.2%, 문서 관련 검사는 18.9%로 나타났다(Peterson, Fabricant & Field, 1978, Saks & Wissler(1984)에서 재인용). 그러므로 전문가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와 실제 재판 상황에서 판사나 배심원들이 특정 전문가의 증언의 내용, 증언의 양, 어려움의 정도에 따라 전문가 증언이 유무죄 판단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평가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그러므로 이 연구의 결과는 한국의 판사와 배심원들이 특정 영역의 전문가들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 및 판사가 전문가 증언을 고려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특정 기준들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초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다. 하지만 이 결과는 앞으로 법정에서 전문가의 증언이 유무죄 판단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후속 연구에 기초 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며 관련 후속 연구의 토대와 시작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판사나 일반인들은 다른 분야의 전문가들 보다 법과학 증거나 의학적 증거 관련 전문가, 즉 DNA 전문가, 약물/화학 전문가, 법의학자, 지문 전문가, 의사들의 법정증언이 다른 분야의 전문가의 증언보다 일반적으로 유무죄 판단을 내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들이 더 정직하고 유능하며 신뢰롭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하지만 거짓말 탐지 검사관, 회계사/부동산 감정가, 경찰의 법정 증언은 유무죄 판단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비율이 가장 낮았다. 이는 Saks & Wissler(1984)의 연구에서 의사, 화학자, 총기류 전문

가의 증언에 가장 높은 비율로 동의할 것이라는 의견과 거짓말 탐지 전문가의 증언에 가장 낮은 비율로 동의할 것이라는 의견과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미국에서 배심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Saks & Wissler(1984)의 연구는 약 15년전에 발표된 연구이고 그 동안 법정에서 전문가가 증언할 수 있는 영역이나 분야는 많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한국의 판사나 일반인들은 거짓말 탐지 분석관을 제외하고는 분석실이나 실험실에서 일하는 전문가들의 법정 증언이 일반적으로 법적 판단에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 분야의 전문가들은 다른 전문가들 보다 더 정직하며, 유능하고, 신뢰롭다고 인식하고 있다. 설문 결과를 통해 경찰, 회계사/부동산 감정가, 거짓말 탐지 전문가들은 판사와 일반인 모두 중요성, 정직성, 유능성, 신뢰성이 가장 낮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점은 한국에서도 일반인 및 판사들 일관적으로 특정 분야 전문가에 대해 회의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경찰관의 경우 법정 증언이 거부되는 경우가 다른 전문가들 보다 많은 것으로 확인 되었다. 판사든 배심원이든 특정 전문가에 대해 더욱 회의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으며 타당하고 신뢰로운 전문가 증언이라 할지라고 이런 부정적인 인식으로 인해 증언의 신빙성(증명력)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는 반대로 법과학 또는 의학적 증거들이 타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분석이 이루어졌거나 법정에서의 증언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법과학 증거를 분석한 전문가의 증언이기 때문에 실제보다 더 높은 증명력(probativ value)을 부여 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특정 분야의 전문가에 대한 평가는 후광효과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특정 전문가에 대한 개인적인 경험이나 CSI 또는 법정 관련 드라마, 뉴스에서 보여지는 법과학 분석관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 때문에 특정 분야 전문가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했을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시각이나 태도가 실제 후광효과에 의한 것인지, 한국에서의 CSI 영향은 얼마나 강한지, 실제 법적 판단에 직간접적으로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또는 판사가 증거에 대한 허용성을 평가할 때 실제로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심층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미국에서 이루어진 연구들에 의하면 법과학 증거, 특히 DNA 증거는 일반인들의 법적 판단에 강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Lieberman, Carrell, Miethe, & Krauss, 2008). 일반적으로 DNA 분석 기법에 대한 연구나 증거로서의 신뢰도는 아주 높음에도 불구하고 DNA 증거 및 법과학 증거들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National Research Council, 2009). 미국에서도 법과학 증거에 대한 분석의 질(quality)을 유지하기 위한 통계나 분석의 정확성에 대한 보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또한 그 결과에 대한 해석이 타당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감독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Garrett & Neufeld, 2009). 미국에서도 1980년대부터 DNA 검사를 통해 확인된 오판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법과학 증거 분석의 실수, 적절하지 않은 분석 방법 사용, 전문가의 부적절한 법정 증언으로 인한 오판이 확인되고 점차 미국 내에서 법과학 분야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미국 국립과학 학술원(National Academy of Science)은 법과학 증거의 감독 강화와 연구 및 지원에 대한 권고 사항들을 제시하며 법과학 증거가 법정에 도입됨으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였다(Garrett & Neufeld, 2009; National Research Council, 2009). 심희기(1999)는 전문가가 분석에 사용한 과학적 이론의 유효성, 기술의 유효성, 그 기술을 특정 사건에 적절하게 실행했는지 여부 등에 대한 검토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한국의 경우 법과학 관련 전문가 부족하고 많은 분량의 증거를 단 몇 명의 전문가가 감청해야 하는 상황에서 감정 자체가 과학적일 수 있을지에 대해 의심스럽다고 하였다.

판사들은 화학/마약 전문가와 총기류 전문가를 일반인 보다 유무죄 판단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인식하고 더 유능하다고 생각하며 신뢰하지만 일반인들은 판사보다 경찰관의 증언이 유무죄 판단에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유능하며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런 법과학 증거에 대한 허용성을 검토해야 하는 판사들이 DNA와 같은 특정 증거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가이다. 예를 들면, 미국의 여러 분석 기관에서는 Profiler Plus나 PowerPlex와 같은 검사 도구(testing kit)를 사용하여 DNA 시료를 분석하지만 이 검사 도구들에 대한 타당성 평가 연구가 많지 않아

Daubert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검사 도구를 사용한 DNA 검사 결과가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되고 있다(Mellon, 2001). 과학의 발전이 빠른 속도로 이루어짐은 감안하면 판사의 개인적인 자유 심증에 의해 과학적 증거에 대한 신뢰성과 타당성의 판단이 가능하지 않는 경우가 점차 많아질 수밖에 없고 전문가가 법정에서 증언을 해야 하는 경우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과학적 증거와 전문가 증언을 이용하여 법적 판단을 내려야 하는 판사의 경우 과학적 증거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미국의 연방 사법센터(Federal Judicial Center)에서는 판사들의 교육 목적을 위해 과학적 증거의 매뉴얼(Reference Manual of Scientific Evidence)을 발간하여 판사들이 다툼이 일어날 수 있는 과학의 영역에서 문제를 확인하고 논쟁을 줄이기 위한 교육적인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 한국에서도 판사에게 타당하고 신뢰로운 방법론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들과 과학적 증거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판사들은 전문가 증언에 대한 허용 여부를 고려할 때 전문가가 관련 분야에 대해 받은 훈련 내용과 증언에서 사용한 이론, 증거 분석, 연구 방법등이 학계에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지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두 번째 기준의 경우 증거의 신뢰성을 판단할 수 있는 Daubert의 네 가지 기준 중 하나에 해당된다. 한국에서는 증거에 대한 정형화된 규칙이 존재하지 않고 허용성 판단은 법관의 논리와 경험에 기초한 자유 심증에 맡겨져 있지만 기존 판례들에 의하면 거짓말 탐지나 필적감정과 같은 법과학 증거에 대해 미국의 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심희기, 1999; 유혁상·권창국, 2004). 또한 과거 재판에서 전문가로 증언했는지의 여부도 판사들에게는 중요한 기준으로 인식되고 있었는데 이는 법정에서 증언한 경험이 많은 전문가일수록 법정에서 전문가로 증언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을 것으로 생각 된다. 앞으로 한국 판사들이 과학적 증거나 전문가 증언에 대한 허용 여부를 판단할 때 기초가 되는 법관의 "자유심증주의"에 대한 실체나 그 구조, 즉 실제로 한국의 판사들은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전문가 증언에 대한 허용을 고려하는지, 그 기준들이 특정 사건에서는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실증적 연구들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과학적 증거와 관련된 전문가의 자질과 실험 또는 분석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자료와 경험의 축적과 미국의 연방증거규칙이나 Daubert 기준처럼 한국에서도 과학적 증거나 전문가의 증언에 대한 일반적인 판단 기준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개별적인 증거들에 대한 판단 기준에 대한 정립이 필요하다. 앞으로는 재판상황에서 전문가들의 증언이 유무죄 판단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주는지, 특정 재판 상황에서 판사들은 전문가 증언의 허용 여부를 결정할 때 어떠한 기준을 사용하는지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감정인 또는 전문심리위원들의 충분한 확보도 필요하지만 전문가에 대한 자격 요건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더 나아가 법정 증언에 대한 규범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앞으로 법정에서 공정하고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 한국에서도 전문가의 법정 증언이 활성화되길 기대해 본다.

참 고 문 헌

- 박광배 (1997). 과학적 증거의 법적 타당성. *형사정책연구*, 8(1), 79-107.
- 법원행정처 (2007). 전문심리위원 제도 해설. 사법정책실.
- 심희기 (1999). 과학적 증거의 허용성과 신빙성. *형사법연구*, 12, 1-24.
- 유희상·권창국 (2004). 주요 선진국의 과학적 수사기법의 도입과 활용방안: 과학적 신뢰성의 판단기준과 범인식별을 위한 사회과학적 분석기법을 중심으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 Daubert v. Merrell Dow Pharmaceuticals, 113 S. Ct. 2795, (1993).
- Faigman, D. L. & Monahan, J. (2005). Psychological evidence at the dawn of the law's scientific age. *Annual Review of Psychology*, 56, 631-659.
- Federal Rules of Evidence (2004). Retrieved July, 15th 2008 from <http://www.law.cornell.edu/rules/fre/>
- Federal Judicial Center (2000). Reference manual of scientific evidence. Retrieved from [http://www.fjc.gov/public/pdf.nsf/lookup/sciman00.pdf/\\$file/sciman00.pdf](http://www.fjc.gov/public/pdf.nsf/lookup/sciman00.pdf/$file/sciman00.pdf)
- Garrett, B. L. & Neufeld, P. J. (2009). Invalid forensic science testimony and wrongful convictions. *Virginia Law Review*, 95(1), 1-97.
- Gotowski, S. I., Dobbin, S. A., Richardson, J. T., Ginsburg, G. P., Merlino, M. L., & Dahir, V. (2001). Asking the gatekeepers: A national survey of judges on judging expert evidence in a post-Daubert world. *Law and Human Behavior*, 25(5), 433-458.
- Krafka, C., Dunn, M. A., Johnson, M. T., Cecil, J. S., & Miletich D. (2002). Judge and attorney experiences, practices, and concerns regarding expert testimony in federal civil trials. *Psychology, Public Policy, and Law*, 8(3), 309-332.
- Kim, Y. S., Barak, G., & Shelton, D. E. (2009). Examining the "CSI-effect" in the cases of circumstantial evidence and eyewitness testimony: Multivariate and path analyses. *Journal of Criminal Justice*, 37, 452-460.
- Kovera, M. B., McAuliff, B. D., & Herbert, K. S. (1999). Reasoning about scientific evidence: Effects of juror gender and evidence quality on juror decisions in a hostile work environment case.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84(3), 362-375.
- Kovera, M. B. & McAuliff, B. D. (2000). The effects of peer review and evidence quality on judge evaluations of psychological science: Are judges effective gatekeepers?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85(4), 574-586.
- Lieberman, J. D., Carrell, C. A., Miethe, T. D., & Krauss, D. A. (2008). Gold versus platinum: Do jurors recognize the superiority and limitations of DNA evidence compared to other types of forensic evidence? *Psychology, Public Policy and Law*, 14(1), 27-62.
- McAuliff, B. D., & Groscup, J. L. (2009). Daubert and psychological science in court: Judging validity from

- the bench, bar, and jury box. In J. L. Skeem, K. S. Douglas, & S. O. Lilienfeld (Eds.). *Psychological science in courtroom: Consensus and controversy*. (pp. 26-54). New York: The Guilford Press.
- Mellon, J. N. (2001). Manufacturing convictions: Why defendants are entitled to the data underlying forensic DNA kits. *Duke Law Journal*, *51*, 1097-1137.
- National Research Council (2009). *Strengthening forensic science in the United States: A path forward*. Washington DC: The National Academies Press.
- Robbers, M. L. (2008). Blinded by science: The social construction of reality in forensic television shows and its effect on criminal jury trial. *Criminal Justice Policy Review*, *19*(1), 84-102.
- Stevens, D. J. (2008). Forensic science, wrongful convictions, and American prosecutor discretion. *The Howard Journal*, *47*(1), 31-51.
- Saks, M. J., & Wissler, R. L. (1984). Legal and psychological bases of expert testimony: Surveys of the law and of jurors. *Behavioral Sciences and the Law*, *2*(4), 435-449.
- Tyler, T. (2006). Viewing CSI and threshold of guilt: Managing truth and justice in reality and fiction. *Yale Law Journal*, *115*, 1050-1085.
- Vidmar, N. (2005). Expert evidence, the adversary system, and the jury.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95*(S1), 137-143.

Perceptions of Expert Witnesses and Their Admissibility Evaluations

Min C. Kim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Expert testimony is intended to assist the trier of fact in understanding certain type of evidence and the admissibility of expert evidence is determined by the trial judge. The admissibility standards for expert witness exist in the United States, but Korean legal system do not have structural standards or explicit rules for evaluating the admissibility of scientific evidence or expert testimony. This study examined 1) general perceptions of Korean judges and lay people on a variety of expert witnesses, 2) judges' admissibility evaluation experiences, and 3) which criteria are considered to be important when evaluating admissibility. The results indicated that Korean judges and lay people rated forensic science or medical experts as most important, honest, competent, and reliable, whereas police officer, accountant/appraiser, and polygraph expert were placed at the bottom. Further, training, general acceptance, prior expert testimony experience, and level of education are perceived as important criteria when evaluating admissibility of experts in Korea.

Keywords: expert testimony, scientific evidence, admissibility standards, perceptions of expert witnesses

1차원고 접수일 : 2010년 7월 10일
수정원고 접수일 : 2010년 8월 17일
게재 확정일 : 2010년 8월 22일